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02

발의연월일: 2024. 7. 24.

발 의 자:서일준 · 권영세 · 백종헌

조승환 • 박성민 • 우재준

이상휘 • 권성동 • 안상훈

정점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·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 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한편,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관광·휴양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,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·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개발구역과 해양관광지구 지정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,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·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 특히, 2017년에 도입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경우 중앙집중형 승인제도와 복잡한

절차로 인하여 아직까지 지정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.

이에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, 지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관광진흥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2조, 제15조, 제20조의2 및 제23조).

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국토교통부장관은"을 "시·도지 사는"으로. "시・도지사"를 "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. 이하 같다)"으로, "관계 중앙행정기관"을 "관계 행정기관"으로, "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06조"를 "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"로, "중앙도시계획위원회"를 "지방도시계 획위원회(이하 "지방도시계획위원회"라 한다)"로. ". 「건축법」 제4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" 을 "를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시·도지사가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이"로 하고. 같 은 조 제3항 전단 중 "시·도지사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하며.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 로. "주민 및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 하 같다)"을 "주민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"국토교통부장관 은"을 "시·도지사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지정대상구 역이 둘"을 "둘"로. "걸치는 경우에는 해당"을 "개발구역이 걸치는 경

우 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권자는 개발구역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행정구역이 포함된"으로, "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"를 "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"시·도지사가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이"로 한다.

이 경우 관계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은"을 "시·도지사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·도지사가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이"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"국토정책위원회"를 각 "지방도시계획위원회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시·도지사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은"을 "시·도지사는"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전단 중 "시·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"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은"을 "시·도지사는"으로, "국토정책위원회"를 "지방도시계획위원회"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22호 중 "허가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유선장,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 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)"를 "허가"로 한다.

제20조의2제1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의"를 "시·도지사는

시장·군수·구청장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토교통부장관은"을 "시·도지사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토교통부 장관은"을 "시·도지사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국토교통부장 관은"을 "시·도지사는"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제3호 중 "제7조제1항, 제9조제1항, 제12조제3항, 제24조제 1항"을 "제24조제1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조(개발구역의 지정 등) ① 국 제7조(개발구역의 지정 등) ① 시 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 ・도지사는-----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 여 <u>시·도지사</u>의 요청에 따라 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----의한 후 <u>「</u>국토의 계획 및 이 ----관계 행정기관----용에 관한 법률 | 제106조에 따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13조 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「자 연공원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-----기방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(같은 법 제2조 | (이하 "지방도시계획위원회"라 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한다)-----경우에 한정한다),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 는 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 역을 지정할 수 있다. 개발구역 의 지정을 변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. 다만, 건축분야 위원 서 삭제> 2명 이상이 참석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「건축법」 제4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 항을 심의한 경우 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 1. ~ 5. (생 략)

- ②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하는 때에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(이하 "개발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시·도지사의 개발구역 지정요청은 제11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·제출 하여야 한다.
- ④ <u>시·도지사는</u>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·변경 요청을
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이</u>
③시장·군수·
 구청장
·
· ④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

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<u>주민 및</u> <u>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</u> <u>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·고시하는 때에는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지정대상구역이 물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가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

주민
⑤ <u>시·도지사는</u>
6 둘 <u>개발구</u>
역이 걸치는 경우 제1항에 따르 게바그여의 기거 따는 버건
른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리기는 개반구여 면접이 2보이
권자는 개발구역 면적의 2분의 1으 초과하는 해저구여이 표하
<u>1을 초과하는 행정구역이 포함</u> <u>된된다</u> . <u>이 경우</u>
관계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
교계 이 그러워서 됩니어역약

- ⑦ (생략)
- ⑧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하는 때에는 「건축법」 제71 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하고, 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 「건축법」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개발구역에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「건축법」 제6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⑨·⑩ (생 략)
- 제8조(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) ①
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내용 중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협의 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

<u>한다.</u>
⑦ (현행과 같음)
®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이</u>
⑨·⑩ (현행과 같음)
제8조(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) ①
<u>시 · 도지사는</u>

여야 한다.

- ② 시·도지사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9조(개발구역 지정의 해제) ①
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
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 해당될 경우에는 <u>국토정책위원</u>
 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
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는 <u>국</u>
 <u>토정책위원회</u>의 심의를 생략할
 수 있다.
 - 1. 개발계획이 수립·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

2. • 3. (생략)

②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이</u>
제9조(개발구역 지정의 해제) ①
기방도시계획
<u> 위원회</u>
기비 드 기 제 최 이 이 된
- <u>지방도시계획위원회</u>
1
<u>시장・군수・구청장</u>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- ② (생략)
-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<u>국토교통</u> <u>부장관은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개발계획의 승인 등) ①
 시·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
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
 받아야 한다.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
 또한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
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
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(생 략)
 - ③ <u>국토교통부장관은</u>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면 <u>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</u> 거쳐 야 하고,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한다.
 - ④ ~ ⑥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시</u> ·도지사
<u> </u>
제12조(개발계획의 승인 등) ①
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개발계
획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
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·도지사는
기방
도시계획위원회
<u></u>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인·허가등의 의제) ① 사업시행자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하가·인가·지정·승인·협의·신고 등(이하 "인·허가등"이라 한다)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·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,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.

1. ~ 21. (생략)

22. 「자연공원법」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<u>허가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, 탐방로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</u>

ll15조(인·허가등	의 의제) ①
· 1. ~ 21. (현행고	l 가스)
00	一色日/
<i>2</i> 2.	
֓ "	
<u>허가</u>	

경우에 한정한다)

23. ~ 43. (생략)

② ~ ⑤ (생 략)

제20조의2(해양관광진흥지구의 기 지정에 관한 특례)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의 요청 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, 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절차 외 에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심의 를 하여야 한다.
- 1. ~ 3. (생략)
- ③ 시・도지사는 해양관광진흥 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 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 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관계 시 · 도지사와 공동으로 종합계 획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| <삭 제>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 및 종합계획 변경안을 함 께 받은 경우에는 종합계획 변

$23. \sim 43$	b. (현행과	같음)
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

(2)	\sim	(5)	(현행과	같음)

저]20조	:의2	2(해양	냥관광>	진흥	지구	의
	지정	에	관한	특례)	1	시 •	도
	<u> 기사</u>	는	시장	• 군수	• 구	청장의	<u> </u>
	\bigcirc	2]	L 2J 7	ነጌ			

② <u>시·도지사는</u>

1. ~ 3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경 및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각각 필요한 다음 각 호의절차를 절차별로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,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 결정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.

- 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
- 2.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
- ⑤ <u>국토교통부장관은</u> 해양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.
- 1. ~ 3. (생략)
- ⑥ (생략)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 진흥지구가 제9조제1항 각 호 의 사유 외에 제5항제3호에 따 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해양관광진흥지 구를 해제할 수 있다.
- 제23조(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 저 권 발전기획단) ① (생 략)
 -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 ②

⑤ <u>시·도지사는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⑥ (현행과 같음)
⑦ <u>시·도지사는</u>
<u>.</u>
베23조(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
권 발전기획단) ① (현행과 같
음)
②

한	업무를	수행한다.
---	-----	-------

- 1. · 2. (생략)
- 3. 제6조제1항, <u>제7조제1항</u>, 제9 <u>조제1항</u>, 제12조제3항, 제24조 <u>제1항</u>, 제25조제1항 및 제26 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 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
- 4. (생략)
- ③ (생 략)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 <u>제24조제1항,</u>
4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